의 안 번 호 1767 【울산광역시 중구 노점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O 제 출 일 자 : 2021. 5. 31.(월)

O 제 출 자 : 중구청장

○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31.(월) ○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6. 14.(월)

2. 제안이유

O 노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,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노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O 새로운 점용허가 시 중구 관내 거주 저소득 주민에게 우선배정 할 수 있 도록 정함(안 제4조)
- 노점 관리 등에 필요한 경우 「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정함(안 제6조)
- O 행위의 금지에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않는 행위를 추가(안 제 7조)
- O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등 별지 서식을 변경함.

4. 근거법규

- 「도로법」제61조 (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)
- O 「도로법 시행령」제55조 (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종류)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제6조 (공유재산의 보호에 관한 규정)

5. 검토의견

- O 노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과정 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· 보완하고,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, 등록된 상인회와의 소통근거 마련과
 - 그 밖에 도로점용에 관련한 신청서 및 서식 등을 조례안에 맞게 개정 하 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
-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